



**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했나요?**

# 코로나 19 의심 임상증상

✓ 발열

37.5°C ↑

✓ 기침



✓ 호흡곤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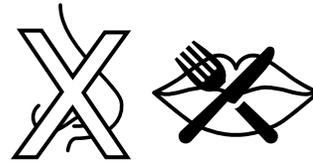
✓ 오한

✓ 근육통

✓ 두통

✓ 인후통

✓ 후각, 미각 소실



머리 아파

목도 아프고

구토

온몸이 다 아파

설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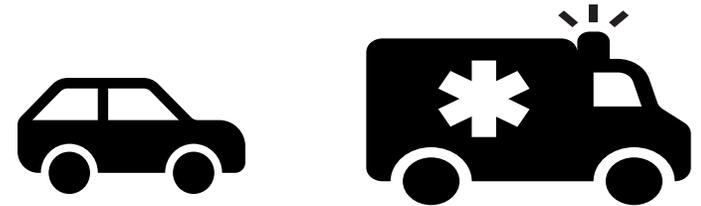
#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다면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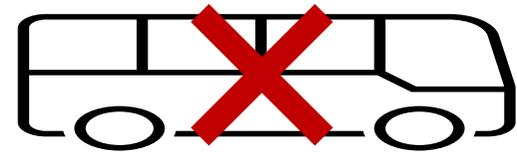
**등교 중지**



담임선생님께  
전화



방문 전 1339로 전화  
선별진료의료기관



# 학교에서 의심증상 발견



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 
일시적 관찰실로 이동



- ✓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
- ✓ 보호자 인계가 어려운 경우  
119지원 요청



검사유무결정



보건소 상담 후 관할보건소 및  
선별진료의료기관 방문진료



#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 인정 안내



## 확진 받은 학생

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 
격리 해제할 때까지  
등교중지

- 입원치료통지서\*



## 격리 통지 받은 학생

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 
격리 해제할 때까지

- 격리통지서



## 실거주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

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 
격리 해제할 때까지

- 동거인의 격리통지서

<유의사항>

- 다만,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, 학생은 등교 가능

##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부터 의심증상 학생 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 **등교중지**



Q: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


A: 학생이 **등교수업을 희망**하는 경우,  
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 
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 
**의사의 소견** 등으로 확인 후 등교합니다.

(증상이 호전된 다음날 등교)  
(‘예시’ 해열제 복용하여 6.7.(일)에 열이 내려가고,  
6.8.(월)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 
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)

- ✓ **코로나19 검사 결과 ‘음성’인 경우**
    -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
(예: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(발급 가능 시), 문자 통지 사본 등)
  - ✓ **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**
    -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, 학부모의견서 등
    - ※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발급 가능 시 권장)
    - ※ **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**  
(예: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, 진료확인서,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 등)
-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**





**감사합니다**